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4나52777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4나5277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2가단25987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노현철, 이왕민

피고, 피항소인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우

변론 종결 2024. 9. 13.

판결 선고 2024. 11. 15.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2가단259870 판결

주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에게, 피고 C은 21,428,571원, 피고 D, E은 각 1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2. 29.부터 2011. 8. 2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대출약정의 체결 및 대출원리금 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는 2008. 5. 14. 중소기업은행, J저축은행, K저축은행, L조합으로 이루어진 대주단과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제1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같은 날 대주단으로부터 70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는 2009. 12. 3. N 주식회사(2012. 3. 2. '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와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제2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대주지위 양수 및 보증계약의 체결

1) A 주식회사(2012. 3. 2. 'H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후 2014. 12. 3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모두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9. 12. 4. 위 대주단으로부터 이 사건 제1대출약정에 따른 대주의 지위를 양수받은 다음, I에게 70억 원을 이율 연 10%, 지연손해금을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09. 12. 4. G로부터 이 사건 제2대출약정에 따른 대주의 지위를 양수받은 다음, M에게

같은 날 77억 원을, 2010. 9. 2. 10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3)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I이 부담하는 이 사건 제1대출약정에 기한 원리금 채무 및 M가 부담하는 이 사건 제2대출 약정에 기한 원리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관련 선행소송 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1. 2. 15. 이 사건 제1, 2대출약정의 주채무자들과 연대보증인 망인을 상대로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4126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8. 17. 망인에 대하여 "원고에게, 주채무자들과 연대하여 망인은 7,865,023,288원 및 그 중 6,999,900,000원에 대한 2010. 12. 29.부터 2011. 8. 20.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이하 '제1보증채권'이라 한다)을, 8,762,744,109원 및 그 중 7,979,000,000원에 대한 2010. 12. 29.부터 2011. 8. 20.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이하 '제2보증채권'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선행소송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9. 25. 확정되었다.

라. 망인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 1) 망인은 2015. 8. 13. 서울회생법원 2015하단7348, 2015하면7348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6. 4. 8.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6. 4. 26. 확정되었다.
- 2) 망인이 이 사건 면책결정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제1보증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2보증채권의 채권자로 G이 기재되어 있다.

마. 망인의 사망 및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 1) 망인은 2019. 7. 19. 사망하였고, 그의 처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이 3:2:2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 2) 원고는 관련 선행소송 판결에 의한 제1, 2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그 중 일부금인 5,000만 원에 대하여 2022.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선행소송 판결 확정 이후 원고가 제1, 2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그 시효중단을 위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위 보증채무를 상속분대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보증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5,000만 원에 대한 각 상속분에 따라 피고 C은 21,428,571원¹⁾, 피고 D, E은 각 14,285,714원²⁾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관련 선행소송 판결에 따라 2010. 12. 29.부터 2011. 8. 20.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면책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제1, 2보증채권도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제1보증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제2보증채권의 채권자를 원고가 아닌 G로 기재하였으므로, 제1, 2보증채권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으로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제1, 2보증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바, 망인에 대하여 확정된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제1보증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2보증채권의 채권자로 G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기 이전에 제1, 2보증채권의 존재 및 그 채권자가 원고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1, 2보증채권은 법 제566조

제7호 소정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위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제1, 2보증채권에 대한 망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들의 면책항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망인은 2009. 12. 4. I과 M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제1, 2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는 연대보증서 2장 모두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는데, 위 두 연대보증서 전문에는 'A 주식회사(당시 원고의 사명) 귀중'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2대출약정 관련 연대보증서에는 '연대보증인들은 G로부터 대주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대출약정상 채무자들의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채무자이기도 한 망인으로서 원고가 제1, 2대출약정상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인지한 채 위 서명, 날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망인은 관련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대출약정에 기한 대출 원리금채권의 양수인임을 전제로, 원고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이 원고의 기망에 의하였다거나 신의칙상 망인의 보증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연대보증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적극 다투었다. 원고가 제1, 2보증채권자로서 제기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망인이 그로부터 불과 3년이 채 경과하기 전인 이 사건 면책결정 신청 당시 제2보증채권의 채권자를 양도인인 G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을뿐더러, 망인이 이 사건 면책결정 신청 시 작성한 채무증대사유서에도 'O(원고의 이전 사명)이 연대보증인 신청인(=망인)에게 책임을 물어 신청인을 패소하여 현대까지도 채권추심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망인이 이 사건 면책결정 신청 시 첨부한 채권자목록에는 총 4명의 채권자에 대한 약 87억 2,660만 원의 채무(P 주식회사: 약 620만 원, Q: 약 1,070만 원, R은행: 약 960만 원, G: 87억 원)가 기재되어 있다. 제2보증채권액이 총 채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은 사실상 위 채무를 면책받고자 이 사건 면책결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들이 그 액수를 기준으로 자신의 채무들을 기억함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망인이 제2보증채권액(약 87억 원) 다음으로 큰 액수의 채무인 제1보증채권액(약 70억 원)을 누락한 것을 두고 단순히 과실에 따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④ 망인은 이 사건 면책결정 신청 이전인 2015. 6. 17. G로부터 이 사건 제2대출약정에 관한 금융거래확인서3)를 발급받았는데, 그 확인내역에는 2015. 6. 17. 기준 '1. 여신현황: PF 기업자금대출로 인한 당초 차입금 87억 원, 잔액 0원', '3. 보증인 현황: 망인의 보증금액 0원', '4. 위 기준일 기준 연체 여부(연체대출금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보유 또는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지체 포함): 없음'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위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망인 내지 M의 G에 대한 잔존채무액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이 사건 제2대출약정에 따른 대주의 지위가 G에서 원고로 이전됨에 따라 G이 채권자로서 이 사건 면책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에, 원고는 채권자로 면책절차에 참여하여 망인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망인으로서 면책 여부 결정에 있어 망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원고 대신 G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특별한 이익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익환

판사임수희

판사권기만

- 1) 50,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 2) 50,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
- 3) 을 제6호증 제17면 참조.